

제12장 경쟁

제12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업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.

- 가. 경쟁자 간 반경쟁적 합의
- 나. 시장 지배력의 남용, 그리고
- 다.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 영역에서, 특히 독점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

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나. 조지아의 경우, 조지아 경쟁 및 소비자청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
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의 경우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과 그 이행 규정
- 나. 조지아의 경우, 「조지아 경쟁법」 과 그 이행 규정, 그리고

다. 이 협정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

제12.2조

목적

이 장은 공정 경쟁의 증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2.3조

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

1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고, 자국의 경쟁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.
2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 당국을 유지한다.
3.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인을 그들의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집행한다.
4.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 모든 상업적 활동에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한다. 각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하고,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한다
5.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그러한 법의 운영과 관련된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6.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한 방식으로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이행한다.

제12.4조 협력

양 당사국은 각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 이를 위하여,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,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양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, 각 당사국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 그러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을,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그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하는 것
- 나. 요청에 따라, 요청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논의하는 것
- 다. 요청에 따라,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, 그리고
- 라. 요청에 따라,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경쟁법 집행 활동을 조정하는 것¹

제12.5조

¹ 한쪽 당사국의 경쟁 당국은 요청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 당국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요청은 관련 경쟁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다.

정보의 비밀유지

1. 이 장은 당사국의 법,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.
2. 당사국의 경쟁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 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, 정보를 제공한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2.6조

기술적 지원

양 당사국은 경쟁 분야에서 양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기술적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- 가. 경쟁법 및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관한 경험의 교환
- 나.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교환
- 다. 훈련 목적의 공무원 교류
- 라.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훈련과정에서 강연자, 자문가, 또는 참석자로서의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, 그리고
- 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

제 12.7 조

분쟁해결

제16장(분쟁해결)의 규정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.